council.chungnam.go.kr

의정정보

2020-12호

12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행복한 **행복의정**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최근 제 · 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2020-12호

12

Contents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07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10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14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19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7 사람중심의 안전한 산업단지를 디자인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36 충청남도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복지체계 개선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50 우리나라 초등학생 통일교육의 실제와 앞으로의 방향 의정토론회
55 충남 수소산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67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 상임위 통과

69 경기도의회,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최근 제 · 개정 법령

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61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질의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2호

01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시행 2020. 12. 10.] [대구광역시조례 제5517호, 2020. 12. 10.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해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설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구·군에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625호, 2020. 12. 15.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지역상권에서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광주광역시 관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소유자 · 임대인 · 임차인,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 · 문화 ·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상생발전”이란 지역상권의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상가 내몰림 현상”이란 차임 또는 보증금 등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하여 지역상권의 상가건물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4. “상생협약”이란 지역상권에서 상가건물의 소유자 · 임대인 · 임차인, 주민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5.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권의 주민이나 주민협의체, 상가건물의 소유자 · 임대인 · 임차인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생발전계획) ①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계획(이하 “상생발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상생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상권의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상권의 창업 · 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상생발전계획의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의 체결 권고) ① 시장은 지역상권의 주민이나 주민협의체, 상가건물의 소유자 · 임대인 · 임차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2.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시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6에 따른 표준권리금계약서

제7조(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 계약) 시장은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광주광역시 지역상생구역(이하 “지역상생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내 시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상가건물의 소유자 · 임대인 ·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
2. 해당 지역 내 차임 또는 보증금 등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상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상생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개·보수 및 정비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2. 지역공동체 당사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3.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 연구비 등의 보조
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5.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선정
2. 상생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상생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4.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상가 내몰림 현상, 상가건물 임대차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3.] [울산광역시조례 제2280호, 2020. 12. 3.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강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소기업”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자리창출 확대, 일 · 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및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소기업의 선정 · 육성 ·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강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한다.

② 시장은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강소기업의 선정) ① 시장은 본사와 사업장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중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및 고용안정성 등에 노력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강소기업의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강소기업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2. 육성계획의 수립 · 시행 · 평가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업·경제 관련 단체 임직원
2. 기업 관련 지방관서·공공기관·금융기관 임직원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울산광역시 기업·경제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기업·경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 · 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2. 일 · 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3. 수평적 · 성평등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4.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5. 구직자 맞춤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진단 · 상담 및 고용개선 실적평가 등을 통하여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③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강소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체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나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소기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지원·평가·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2호
02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1.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16.] [의령군 조례 제2434호, 2020. 12. 16.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채용감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이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에 따른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군이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채용감찰관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한다.

제4조(채용감찰관의 설치 등) ① 군수는 3명 이내의 채용감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채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해야 한다.

1.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행정, 법률, 인사조직,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인사, 법률, 감사, 회계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일반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채용감찰관은 감사부서에 설치한다.

제5조(채용감찰관의 임기) 채용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채용감찰관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채용감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채용감찰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 및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채용감찰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채용감찰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활동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채용감찰관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감찰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채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8조(채용감찰관의 해촉) 군수는 채용감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용감찰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채용감찰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감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채용감찰관의 직무) ① 채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채용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근(常勤)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나.「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2. 산하기관에서 정규직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② 채용감찰관이 채용 과정에 참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2. 채용공고의 관계규정 준수 여부
3.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4. 평가 기준 · 방법 및 점수 산정 등이 공정한지 여부
5. 그 밖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관한 사항

③ 채용감찰관은 참관한 채용 과정이 끝나면 제2항의 확인 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① 채용감찰관으로 위촉되거나 위촉되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 시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행정기관등과 산하기관은 채용감찰관의 직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채용감찰관의 개선 제안 및 감사 요구 등) ① 채용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용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거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 등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채용감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군수는 채용감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채용감찰관 참관 요청) 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을 하려는 행정기관등 및 산하기관의 부서장은 감사기구의 장(「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에게 채용계획을 첨부하여 채용감찰관의 참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참관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감찰관을 채용과정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1572호, 2020. 12. 11.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인프라”란 유성구청사 및 소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
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유성구 관내에 본사 및 연구시설이 소재하는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AI)
2. 사물인터넷(IoT)
3. 빅데이터
4. 가상 · 증강현실(VR · AR)
5. 초고속인터넷
6. 헬스케어
7. 비대면시스템 등 혁신기술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
2.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재정 지원

제7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부담)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 철거 비용 등은 기업 등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실 · 국장급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3.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관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리)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 · 공유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 · 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사람중심의 안전한 산업단지를 디자인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충청남도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복지체계 개선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우리나라 초등학생 통일교육의 실제와 앞으로의 방향 의정토론회

충남 수소산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사람중심의 안전한 산업단지를 디자인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0. 11. 20.(금), 14:00~16:00 / 천안동남소방서 회의실〉

Ⅰ 총 평 (지정근 의원)

❍ OECD 국가 중 여전히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고질적인 산업단지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한 토론회로,

- 토론자로 참석한 학계, 관련 전문가들은 의회 차원에서 도내 산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디자인 접목을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 현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 및 현황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산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안전한 중장기 안전 관련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는 점과
- 현재 시행중인 정부사업과 함께 도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공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관리하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 김현선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 지난 5년간,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분석하면, 전체 사망자 중에서 52%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고, 약 580억원의 피해액을 나타내서 그 심각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음

❍ 사고발생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여러 행동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적요인과 기기 및 장비의 작동이 사고발생을 일으키는 물적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적요인 : 인지, 의식, 준비, 확인, 행동의 오류
- 물적요인 : 기기의 결함 및 부품 노후화

❍ 많은 근로자들이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안전표식체계 가시성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

❍ 사고원인 분석,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디자인 가능모델을 각각 교육, 환경, 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구축할 수 있으며 디자인 적용 대상자의 상황과 과업의 물리적 시간과 비용 모두를 고려하여 최적인 디자인 적용 모델을 선정

❍ 휴식시간, 작업장 환기, 주기적인 스트레칭, 근로자 중심의 그래픽 개발, 위험물 표시사인 등 적극적으로 행동오류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충남 내 산업단지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산업단지를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노후 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작업자의 피로를 줄이고, 산단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달성하는 것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

2 지정토론(5인)

①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

❍ 현재 산업단지의 노후화, 근로자의 노후화 등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가 충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산단의 공통된 고민임

❍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전디자인이란 안전을 포함하는 제품이나 시설 또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도를 높이거나 타 기능과 융합을 통한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전수준을 향상하는 노력을 말함

❍ 현재 산업분야의 트렌드는 최대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산업분야에 걸쳐 시도하는 접근이 이뤄지고 있고 울산시의 사례 참고가 도움 될 것

❍ 안전 홍보와 교육을 위한 예산을 안전 정책에 반영해야 지속적으로 안전디자인을 보급하고 작업자를 배려가능한 산단을 조성할 수 있음

❍ 산업이 고도화되고, 디지털뉴딜, 스마트팩토리 등 ICT신기술을 활용한 안전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인 추세로 충남에서도 작업자를 고려한 편리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

② 권영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올해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고 노후된 설비에서 지속적인 유해물질 유출, 폭발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 산업단지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자의 시각적 인지 측면의 접근 및 현장 분석, 교육, 환경, 제품 등 여건에 따른 디자인적인 제안은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됨

❍ 작업자의 안전을 돕는 시각체계의 개선, 언어와 인종과 관계없이 쉽게 인식 가능한 그림문자의 일관성 유지를 산단에 통일되도록 적용하고 작업장 근로자를 위한 조명환경 개선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

❍ 초기단계에서는 그림문자 외에도 간단한 문자체계가 공용화 되어야 안전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사료됨

③ 송성일 (한서대학교 디자인융합공학과 교수)

❍ 산업단지 내 안전디자인은 유니버셜 디자인측면을 활용한 서비스디자인과정의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함

- 통제와 규제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 조성
- 작업 근로자의 심리적, 행동적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
- 환경 요소별 디자인 개발로 산단이 갖는 낙후이미지 개선

❍ 산단에서 노동자의 작업환경 범위에서 주요 생산 설비와 장비 활용으로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의 각종 물리적 공간과 동선을 중심으로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 산단 주변의 환경은 기존 건물 등의 인공환경과, 산과 강처럼 자연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자연환경을 고려한 조화도 생각해야 하며, 기업 별 산단 내 공간 및 동선 요소와 연계하여 계획을 세운 후 디자인을 실시하는 적합한 방향을 제시해야 함

❍ 국내외 통계에 따르면 환경 색채를 도입한 경우 대략 40%내외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보다 위험도가 높은 공장을 중심으로 도입도 검토되야 할 것

❍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노동자 개별에 맞는 예방 시설 디자인으로 작업 효율성 증대,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개인 및 기업의 피해액을 줄이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고용창출이라는 효과도 기대 가능. 즉, 쾌적한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 인력 유입 등 중소기업 발전의 선순환

❍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기술이 깃든 디자인 개발이 이뤄져야 함

④ 이관형 (前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위원)

❍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그리고 최근 남이천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 울리히 벡 이라는 학자가 지적했듯이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사회' 라고 진단했는데, 위험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위험도가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해 경시하고 효율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음

❍ 발제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기반안전과 관련하여 개선을 위한 작업은 진단부터 피드백, 최종 개선까지 이뤄지는데 무엇보다 불안전 행동을 유발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관찰과 개선실행이 중요하다고 사료 됨

❍ 수많은 안전사고 사례가 인적, 물적, 교육적 요인 등 복잡다양한 원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국회 안전디자인포럼에서

안전디자인 단어가 화두되어 본격적인 안전디자인 관련 논의와 함께 정책 추진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안전디자인 도입의 대표적 사례는 어린이 보행자를 위한 옐로우 카펫으로 설치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횡단보도 대기선 안에서 기다리는 비율이 상승하는 등 디자인의 효과가 입증된 사례임

*** 안전선 대기율 : 66.7% → 91.4%로 25%정도 상승**

***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율 : 41.3% → 66.7로 25.4% 상승(강동근, 2017)**

❍ 고용노동부의 정부지원 사업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클린사업장 인증,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등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이루고 개선사례를 참고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

⑤ 박 신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장)

❍ 울산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재해요인과 디자인요소를 분석하여 사용자 중심의 안전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임

❍ 가이드라인의 최우선은 사용자 우선으로 인간 중심의 핵심이슈를 찾아 산업단지 공간 및 작업환경을 고려한 세부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임

❍ 충남의 산단 환경과 근로자 현황을 통계 분석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통해 도에서는 안전 관련한 기업지원과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을 하여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고 안전다지인 관련 정책을 정착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환경을 재구축 하려 추진하고 있음

❍ 아직까지는 안전디자인 관련 조례가 없다보니 울산시처럼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사례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단지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인적, 물적, 관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안전 디자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지정토론

Q. 충남만의 산업안전디자인 정책의 포커스는 어디에 두어야?

[질문 : 권영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기본적 목적에 충실하여 충남형 디자인가이드 가이드라인을 모색하고 하나의 브랜드화 하는 것도 향후 디자인 정책의 방향으로 삼을 수 있을 것

[답변 : 김현선 교수]

❍ 성장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사람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사람이 소외되는 미래 사회의 현상을 막기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재의견 : 권영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3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Q.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등의 시도는 없었는지?

[질문 : 청중 1]

❍ 아직까진 디자인 관련 조례 제정은 없지만, 노동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광주시)는 제정되었음

[답변 : 이형복 박사]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산업단지에서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나온만큼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마무리 발언 : 지정근 의원]**

Ⅲ 토론회 결과

<과 제>

1. 산업단지 내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2. 국민디자인단처럼 도 차원의 디자인 전문가 집단 구성 등 TF도입 필요
3. 작업자 중심의 효과적인 안전교육 실시 계획 수립
4. 산업안전디자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사업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도를 높이는 연구를 통해 도내 산단 13만 여명의 근로자 모두가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도 차원의 정책 필요

❍ 화학물질 유출, 화재 등 계속되는 산단 내 사고로부터 예방과 대응까지 모든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재점검 필요

❍ 국가안전대진단(범정부), 클린사업지원(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안전추진 사업의 실시 이후 평가에 있어 충남만의 지역특수성이 관계부처의 평가에 반영되도록 도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산단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안전디자인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구매 등 일상으로 안전을 확대하는 정책 마련 요구

Ⅳ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건축도시과)
-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복지체계 개선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0. 11. 23.(월), 14:00~16:00 / 서천문화원 2층 강당〉

Ⅰ 총 평 (전익현 의원)

❍ 금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복지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참가자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현실을 진단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닥터헬기 및 119구급대를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개선을 포함 우리도 현황에 맞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등 응급의료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Ⅱ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이혜정 국립중앙의료원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 선임연구원〉

❍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크게 '병원 전 단계'와 병원단계로 구분됨.

- 병원 전 단계는 ①환자발생의 신고와 구급차 출동, ②구급차 현장 도착 전 전화상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응급처치 요령 지도, ③구급대에 의한 현장 응급처치, ④구급차-병원간 정보교환으로 이송병원 결정
- 병원 단계는 ①현장처치의 검토 및 연속적인 응급처치, ②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 ③입원치료 혹은 응급수술 결정, ④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 2017년 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반영한 응급의료 취약지 현황은 16개 시·군구 중 **11개 지역(68.75%)**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해당 됨. (서천, 태안 등 천안, 아산, 계룡, 논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이 30%이상인 시·군구

❍ 우리 도는 **①충남천안권역, ②대전권역, ③전북익산권역**으로 구분함.

- 권역응급의료센터(1) : 단국대학교병원
- 지역응급의료센터(7) : 순천향대천안병원, 천안충무병원, 아산충무병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백제종합병원, 당진종합병원
- 지역응급의료기관(8) :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보령아산병원, 서해병원, 서산중앙병원, 건양대부여병원, 청양군보건의료원, 태안군보건의료원,
-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비해 많은 편이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적은편임.
- 동일한 기관 종별 안에서도 지역별로 병상 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충남지역은 간호사 수가 특히 전국 평균에 비해 적은 편임.

❍ 응급의료기관이 많이 분포한 천안 동남구가 응급실 이용자수가 많음.

❍ 3대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내 응급실 도착비율 ➡ **소폭 상승추세**

①급성심근경색(전국 13위) ➡ **2시간,** ②뇌졸중(전국 4위) ➡ **3시간,** ③중증외상(전국 3위) ➡ **1시간 이내**

❍ 충남의 3대 중증응급환자의 **전원비율은 전국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음.

❍ 중증응급질환자의 최초 내원에 따른 연도별 응급진료결과 분포는

- **사망, 전원 ➡ 급성심근경색 중증외상 환자는 전원율이 낮게 분포**
- **응급의료권역으로는 전북익산권역이 전원율이 높게 나타났고 충남천안권역에서는 입원율이 높았으며, 대전권역의 경우 전원율이 점차 감소**

❍ 연도별 내원수단으로 119구급차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기타 자동차를 이용하여 내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중증외상환자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내원하는 비율이 높았음.

- 권역센터에 내원한 환자 중 119구급차와 항공이송을 통해 내원한 비율은 매년 증가함.
- 모든 질환에서 서산시 전원환자 발생율이 가장 높고 홍성군의 경우 매년 증가함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천안시와 아산시, 부여군에서는 전원환자가 발생율이 매년 감소함

❍ 전원사유로는 모든 질환에서 '전문응급의료를 요하므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인 경우가 가장 높고,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

- 50% 이상이 기타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하였음

❍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도내 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비율이 감소,

- 충남천안(동)권역에서는 동일권역으로 이송되는 비율이 약 60%로 나타났으며 충남천안(서)권역에서는 대부분의 환자(95%이상)가 권역 외로 이송되었음.

❍ 뇌졸중 및 중증외상의 경우는 도내 전원율이 증가함.

- 충남천안(동)권역에서 동일권역으로 이송된 비율이 2015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증가하였고 충남천안(서)권역에서는 5%미만임

❍ 충남의 급성 심정지 환자의 저조한 소생률은 운수사고 및 자살과 관련된 질병 외 심정지 환자군에서 기인하고 있음.

❍ 취약지 응급의료의 대안으로 ①응급의료자원 확보 ②병원 전 단계의 역량 강화 ③병원 단계 개선 ④도민의 현장대응능력 강화 ⑤응급의료 기반강화를 제시함.

❍ 높은 인건비로 인한 농어촌 등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부족의 만성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있으나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움.

❍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 및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의료 기반강화 및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충남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2016년부터 운영함.

- 출동요청지역은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당진시 순으로 많았음.
- 2018년 도내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발병부터 최종치료가지 걸린 시간은 2017년에 비해 약 2시간 단축됨. (특히 심혈관 질환자는 약 10시간 단축됨.)

❍ 소방펌프차에 자동제세동기를 포함한 기본응급처치 장비를 구비하여 119구급차와 동시출동하거나 구급대 공백시 자체 출동하는 펌뷸런스 다중 출동체계를 구축

❍ 119구급대의 제한적인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중증환자 발생시 스마트기기를 활용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의사에게 의료지도를 받아 응급처치를 실시함.

- 구급차 탑승대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늘려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구급대원을 보호하고자 함(운전원 1인, 주 처치자 2인 구성) 2015년 8.4% ➡ 2019년 100%
-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분류(긴급-응급-비응급-사망)하고 긴급성에 따라 응급처치 및 적정병원으로의 이송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

❍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실생활 권역을 기반으로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2011년), 권역외상센터(2014년)를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지정 ➡ 충남권역내 최종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수행 및 다양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 단국대병원을 거점으로 태안군보건의료원, 서산의료원 두곳과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함.

❍ 심폐소생술 교육협의체 운영을 통한 일반인 홍보물 제작 배포 및 CPR교육의 질 관리

❍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전원 현황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 근거자료 제시

❍ 충청남도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특성과 소생률 증가를 위한 전략 연구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환자이송체계 개선, 도민 대상 홍보 등 충남도내 현황에 맞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등 응급의료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함.

2 지정토론 (6인)

① 조현영 (단국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

❍ 닥터헬기의 도입배경으로 산악 및 유인도서가 많은 우리도의 지리적 특성과노인비율, 유인도서민 상주인구수 및 응급의료기관 설치율 낮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응급환자가 응급실 도착 전 사망률이 높음을 주장함.

❍ 이에 닥터헬기 도입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시켰음.

- 삽시도 : 2시간 49분 ➡ **48분** / 원산도 : 2시간 29분 ➡ **46분**

❍ 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구조사, 간호사가 탑승하고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며, 기계호흡장치 등 전문 치료장비의 사용으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송건수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1,343명이고 이중 생존 퇴원율이 79.6%로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이송환자군 또한 중증환자 대부분을 이송함 소방헬기를 통한 이송건수는 40건, 현장에서 닥터헬기를 요청하여 환자를 이송한 건수는 80건임.

- 주요 이송 환자 군으로 ①심혈관계 질환(심근경색), ②뇌졸증, ③중증외상, ④기타 중증응급질환 등이며

❍ 중증질환자 예후에 중요한 지표로써 **①증상 발현 후 1차의료기관까지 도착 시간** ②1차의료기간 방문 후 평가 및 응급처치 ③처음 방문한 의료기관에서의 체류시간(전원 결정) **④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 병원간 이송시간** ⑤상급병원 응급실에서 전문적인 치료 수행의 시간 등이 있음.

- 증상이 처음 발견된 후 각 질환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가 시행되는 시각까지의 총 소요시간(①+②+③+④+⑤)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가슴통증 발현 후 심장 혈관의 중재적 시술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환자가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됨.
- 따라서 위에 언급한 각 단계별 소요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중증환자 이송에서 가능한 상황은 ④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상급병원으로 이송, 혹은 ①현장에서 바로 상급병원으로 이송이 있다.
- 서천의 경우 전북익산권역에 속해 먼저 행정구역에 따른 제약을 잘 해결한다면 원광대학교와 단국대병원 두지역의 닥터헬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② 김정식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응급의학팀장)

❍ 충남은 서해안 28개 도서 및 내륙 산간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의료기관 접근성이 매우 낮아 육로를 이용한 환자 이송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됨.

- 치료 및 수술 역량 등 응급의료자원이 천안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그 외 지역은 원거리에 위치하여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가 어려운 현실임 신속한 이송 치료를 위한 항공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송시간 46분)을 확보함
-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이·착륙장 16개 지역 건설을 지원하고 소방헬기 230개 인계점 중 117개 인계점을 추가 지정하여 총 140개 인개점을 확보
-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실적은 출동요청 1,818건 중 출동 1,367건

❍ 충남은 2018년 보건복지부 지정고시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7개소를 재지정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으급의료 접근성을 재고하였으나, 계룡시, 금산군, 예산군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임.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계룡시는 대전권 응급의료기관에 30분 이내, 예산군은 홍성, 아산, 천안지역과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나, 금산군은 인구 30%이상이 30분 이내 응급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움.

❍ 그동안 시설, 장비, 인력(전문의, 간호사)의 부족으로 법정기준 미충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낮은 등급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감액되어 경영상 손실의 폭이 커짐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운영 포기사례가 발생한다고 주장함.

- 응급의료 취약지역 9개 시군에 위치한 10개 응급의료기관에 전국 최초로 국비 규모 이내 지방비를 매칭(도비추가 편성)하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함
-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금산군 소재 새금산병원을 응급당직기관으로 지정하여 24시간 1차 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의사 인건비 지원함.
- 의료취약지역내 24시간 응급실의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를 위한 예산 추가 지원
- 단국대학교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연 2명씩 응급실 전문간호사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파견하여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
-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응급환자 진료 시 거점병원인 단국대병원 전문인력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의사 간 원격협진 및 영상 판독 지원
- AED확대 및 CPR교육 표준메뉴얼 개발 및 실시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
- 충남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운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직 참여
-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체계 구축으로 응급의료분야 다양한 이해관계 조직을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통합된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기반 형성

③ 조영학 (충청남도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

❍ 응급의료체계란?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진료까지 적시・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정보의 구조적・기능적 결합을 말함.

-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 이송자원, 국가응급의료정보망 등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정부(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지자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관리되며 시간민감성이 높아 현장에서 최종치료까지 참여기관 간 유기적 연계, 지역 완결적 서비스 제공, 단기간 집중적 자원 투입, 타 임상진료과 간 협력이 필수적임.

❍ 도내 총 구급차는 임산부전용 구급차 3대를 포함해 총 131대를 보유·운영중임.

- 구급차 1대당 담당인구가 충남 19,529명으로 충북 24,193명, 전북 20,661명과 비교하였을 때 우위에 있음.
- 최근 3년간 총 구급활동 출동건수 426,853건 중 240,700건(247,407명)을 이송
- 환자유형별로는 질병이 144,577명, 사고부상이 55,506명, 교통사고가 35,682명, 기타 11,642명으로 나타남.

❍ 구급대원은 1급 572명, 2급 161명, 간호사 102명, 구급교육 113명 총 948명

- '20년 9월말 기준 119안전센터 80개소와 농어촌지역대 28개소 등 총 110개대 948명의 구급대를 편성·운영중
- 최인접 안전센터에서 출동거점지역 도착소요시간이 17분 이상인 골든타임 미확보지역 농어촌 구급사각지역 10개소에 119구급대를 추가 신설함.
- 펌뷸런스(108대) 다중 출동체계 구축 및 서별 특별구급대 16개대를 운영중임.
- 구급차 3인 탑승율 100%를 통한 전문적인 응급처치 실시
- 스마트의료지도를 통해 지도의사와 실시간 공유로 중증환자 소생률 재고함.

❍ 천안·아산권에 의료기관이 편중됨에 따라 병원 도착시간 등 지역적 편차 발생

- 총 구급활동시간은 평균 34.5분 소요되며 평균대비 적은 시간이 걸리는 소방서는 서북-동남-홍성-아산-당진-계룡순이며 이송가능한 병원이 많을수록 총 구급활동 소요시간이 감소함.
- 구급대 현장조치에는 평균 8.7분이 소요되며 병원이송 완료까지는 평균 18.6분이 소요됨.

- 병원이송에 평균 이상 소요되는 서는 부여-공주-서천-청양-금산-태안 소방서임

❍ 신고접수단계부터 초기대응 이송까지 단계의 업무능력 강화가 필요함

- **119응급의료 상담기능**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2016년 45.4% 2017년 44.7%, 2018년 48.1%로 저조함.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전문 상담요원 부족과 초기대응에 있어 제한적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인해 지도의사 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중증응급환자 부적정 이송 발생

- 전문 상담인력 확대, 구급상황관리 교육과정 확대 운영, 상담매뉴얼 개선 등으로 119상담서비스 전문성 제고 상담서비스 홍보 강화로 24시간 든든한 119 응급상담 서비스 제공

- 충남119종합상황실 상담이 어려울 경우 중앙상황실(소방청)로 자동 전환되는 Back-up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닥터헬기 및 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 지역 단위의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3대 중증응급질환 중심 지역별 응급환자 대응방안 강구

- 지역 및 질환을 반영한 적정 이송 병원 선정, 장비 보강 등 가이드라인 마련

❍ 119구급대원의 이송지침 미준수 관리·감독 강화, 중증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객관적 기준 마련 및 관리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확대 시범사업(특별구급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구급대원 채용 시 응급의료 경력 요건(응급실 근무경력 등) 강화, 업무수행 평가 방안 마련

- 자격 교육기준 강화, 관리체계 일원화 등 지도의사 제도 운영 내실화

- 도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④ 이진희 (서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 2020년 10월말 기준 서천군 인구는 51,933명이고, 65세이상 인구는 18.933명으로 36.45%의 초고령화 지역임.
  - 지역별 고령화 비율은 서천읍(24%), 장항읍(28%)보다 그 외 면지역(43~53%)로써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비율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서천군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성인병 진단율이 높음
  - 고혈압은 38.6% > 27.5%(충남), 당뇨병 15.4% > 11.6%(충남)
- 서천군은 의료기관 61개소(78%)가 서천읍과 장항읍에 밀집되어 있으며 외각지역인 기산면을 비롯한 4곳에는 병의원이 없음.
- 응급의료기관은 서천읍에 소재한 서해병원이 2017년 9월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응급실을 운영 중에 있음.
  - '17년 9월 ~ '20년 10월까지 응급환자는 18,463명(일평균 17.4명)
  - '20년 1월 ~ 10월까지 응급실 이용환자 중 11명 상급병원으로 이송
- '20년 1월 ~ 10월까지 119구급대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은 2,805명(9.19명/일)
  - 이 중 관외지역 이송은 1,910명(68%)으로 동군산병원 1,196명(42%), 원광대병원 289명(10%), 군산의료원 168명(7%)이며 관내지역 이송은 895명(32%)으로 서해병원 746명(26%) 이송되었음
- 충남의 3대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내원 현황은 천안지역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상급의료기관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천군 서해병원의 경우 평일 주간 1.4%, 야간 30.1%, 휴일 68.6%로 군내 의료기관이 야간 및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응급실 이용객이 큰 편차를 보임 그 중에서도 비응급 78.4%, 응급21.6%로 나타남.
- 2021년 서천군 중점사업으로 ①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②응급의료 후송체계 구축, ③보건의료원 설치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 전국 지방의료원이 평균25억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매년 적자운영비에 대한 군비 투입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의료인력 확충에 문제점이 있음.

⑤ 김아진 (서천군의회 의원)

-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함.
-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응급의료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생명권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임.
- 현재 서천군은 2020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36%의 초고령화 지역임.
- 이에 서천군은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사례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사업 등 진행중임.
- 하지만 응급의료체계에 있어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한 불안감이 많음.
-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서해병원 응급실은 열악한 시설로 치료보다는 진단 후 인근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중간역할만 하고 있음.
- 서천군은 지리적으로 전북익산권역에 포함되어 응급환자의 대부분이 군산과 익산을 거쳐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되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안타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의료취약지역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부분의 강화가 필수이며 생명과 건강을 보장 할 수 있는 공공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전문성 강화, 사각지대 없는 응급이송시스템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함.

⑥ 한완석 ((전)서천소방서 비인119안전센터장)

- 서천군 응급의료체계 실태 및 개선 방안으로 ①구급대 등 의료행위의 한계성과 응급현장장악 신속성 개선 ②보건진료소 응급의료 전문화에 따른 협업체계화 필요 ③사고부상, 중증환자 등을 위한 1차지역응급의료기관체계 보안 필요 ④지역응급의료기관 보완에 따른 주민신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을 주장함.
- 전 근무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119구급대의 현장응급의료행위 범위 확대,

병원 및 119당직의사의 응급처치 의료지도 확대를 위해 법령 개정 등 강조함.

- 응급환자이송체계 개선으로 119구급대 등 의료행위의 한계성과 응급현장 장악 신속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보건진료소 설치확대와 응급처치 전문의료인력 확충 등 응급의료인력·장비 전문화에 따른 이송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전문화에 따른 소방과 협업체계화 필요
- 응급의료 및 소방수혜 사각지대를 위한 119지역대 부활
- 119펌뷸런스의 응급처치장비와 배치인력기준 개선 필요

❍ 병원단계의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보완 등 상향조정이 필요함.

- 현 서천군 응급의료기관(서해병원) 의료진 및 노후 의료장비 보완이 시급함.
- 중증외상환자 외 사고부상환자 등 입원치료체계 개선 필요
- 응급의료기관과 주민과의 신뢰도 회복의 선행조치 필요
- 응급 및 일반 환자 등 관외 이송환자의 관내 유치로 서천군사회적소요비용 유출방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함

3 자유토론 (질의답변)

❍ 현재 서천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서해병원의 열악한 시설이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군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만 편중된 지원책만이 최선의 정책인지? **[질의 : 장항 전참사랑병원 관계자]**

⇒ 군내 응급의료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혜자인 군민은 이득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병원이 충청남도와 서천군이 지정한 곳이기에 예를 들어 설명한 것 뿐임. **[답변 : 한완석 전 비인119안전센터장]**

❍ 아직도 서천군 지역의료기관의 응급실은 개선되야 할 부분이 많은데 대안책으로 법률·조례개정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정책으로 서천군 보건소를 의료원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방법은 가능한지? **[질의 : 이병도 마산면 주민자치회장]**

⇒ 2017년 서해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된 후 운영손실을 보존해주기 위해 매년 8억~11억원의 재정지원을 하였고 자체적으로 군립의료원 설립의 고민을 하였으나 전국 지방의료원의 평균적자가 25억원이나 되고 높은 인건비와 이직률로 인해 의료인력 충원의 문제점은 농어촌 등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의 만성적 문제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답변 : 이진희 서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 응급의료사각지대인 서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및 지원보다는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질의 : 이만우 서천문화원장]**

⇒ 서천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대학도 없고 제대로 된 병원도 없어 도민들의 상실감이 크다. 이에 의회에서 보건의료원 설립을 계속 강조해 왔으나 보건의료원 설립은 보건복지법에 의거 병원이 없는 태안, 청양지역에만 설립할 수 있었음. 또한 현재 운영중인 보건의료원 의사 및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중이나 수요자인 지역민들의 신뢰가 없다면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 지대하기에 신중한 판단을 요하며 지속가능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음. **[답변 : 전익현 충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결과

〈과 제〉

1. 응급의료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이송체계 구축 방안 마련
2.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등 농어촌 의료사각지대의 현실성 있는 지원책 마련

〈결 과〉

1.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닥터헬기 및 119구급대를 활용한 환자이송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2.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119구급대의 제한적인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3. 병원단계에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자원 확보 및 노후된 응급시설의 보강이 필요함.
4.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확대 구축 필요.
5. 중증응급환자의 전원현황 분석를 통한 응급의료정책 개발에 활용.
6. 공공의대, 보건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하여 대도시에 비해 불평등을 받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복지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Ⅳ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의 면밀한 검토**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충청남도 응급의료지원센터, 충청남도 소방본부, 서천군 보건소, 서천군 소방서, 서천군의회

우리나라 초등학생 통일교육의 실제와 앞으로의 방향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0. 12. 7.(월) 13:00~15:00 / 충남도의회 소회의실〉

Ⅰ 총 평 (이공휘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관계 공무원과 도의회는 초등학생 통일교육 방향의 전반적인 점검과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통일교육자료 제작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충청남도 초등학생 통일교육이 전국 초등학생 통일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통일교육 교재 마련,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의 실상 교육 등을 제안함.

❍ 앞으로, 현실적인 교육 자료 제작, 보편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한 대책 마련, 학생들뿐만 아닌 교사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초등 통일교육은 남북 교류, 협력,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남북 간 격차, 이질성 심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 역할을 수행함.

❍ 또한, 통일에 대한 국민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당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등 그 역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독일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연방정치교육센터와 각 주의 정치교육센터를 활용하여 통일 이전, 통일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교육이 이원화되어 운영중인 상황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또한, 독일은 통일 과정에 있어 동·서독 간 자매결연을 양독 간 이해를 고취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바,

- 우리 역시 통일 과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공교육 과정에서의 북한 이해를 위한 과목 개설 등의 노력이 필요함.

2 종합토론(5인)

① 박종일 (통일교육개발연구원 연구원)

❍ 우리의 통일교육은 옛날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시대에 맞는 교육자료가 필요함.

❍ 또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체험식 교육의 경우 모든 학교와 학생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충남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제작이 필요함.

② 김희동 (충남통일관 관장)

❍ 통일에 대한 관심은 북한이탈주민과의 토론을 통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강사로 양성하여 맞춤형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이 외에도 통일지정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함.

③ 주종한(충청남도교육청 통일장학사)

❍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1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실시와 관련된 것임.

- 이를 통해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 내에서 통일교육과 역사교육을 실시하라는 의미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짐.

❍ 한편 초등학교 평화·통일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히 도덕, 사회과목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모든 교과에서 가능하고,

- 교과 내용보다 교수 학습 방법, 토론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함.

④ 조철기(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0년도 충남교육청 통일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총 5,400만원이었고, 2021년도에는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닌 통일교육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 다양한 체험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또한,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학생 내 토론회 개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의회차원의 적극 대응 및 지원 방안 제시

3 패널토론

①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통일교육에 있어 전문성 있는 교수와 함께 학생들이 관심있는 쪽으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하고, 교수에 대한 학습 지원 등 다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② 김희동 (충남통일관 관장)

❍ 모든 일은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것을 알게 되었고, 초등학생 통일교육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또한, 직접 충남통일관에 오셔서 관련 체험을 하고, 좋은 경험을 만들고 가시길 바람.

4 청중토론(질의답변)

❍ 통일교육이 이뤄져도 관심이 없으면 아이들이 찾아보지 않는 상황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아이들의 시각에서 통일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학생 찬반 토론 시행 방안 등 제안

[제안 : 충청남도의회 김 연 의원]

❍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주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통일부 간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이 현실임. 통일 교육은 어린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하찮게 치부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고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노력의 필요성 강조

[제안 : 한국자치발전연구원 박병건]

⇒ 초등학생은 스마트폰이 제7의 장기라 부를 만큼 활용도가 높은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AR, VR 교육자료 제공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답변 :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Ⅲ 토론회 결과

<도출과제>

○ 충남도 평화·통일 교육 실적 저조

○ 초등학생 통일교육 방향의 전반적인 점검 필요

○ 일부 학교와 학생에 이뤄지는 체험형 교육 시스템의 개선 필요

<결 과>

○ 충남도 평화·통일 교육 실적 저조는 홍보 부족이 주된 원인인 만큼 홍보 방안 마련 통한 교육효과 확대

○ 안보교육으로 이뤄지는 옛날 방식의 통일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자료 발굴 추진.

- AR, VR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 제작 제안
-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의 실상 교육 등을 제안

○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의 확대 및 교사에 대한 교육 등 교육 방법 개선

Ⅳ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충남 수소산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0. 12. 7.(월), 14:00~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Ⅰ 총 평 (안장헌 의원)

❖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수소팀과 수소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여 충남의 수소산업 육성 추진현황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의 신청으로 마련되었음.

○ 수소산업 관련 충남도 행정부, 학계, 산업현장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선정으로 다양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일부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있었으나, 수소산업 정책 수립 과정의 건전한 현상으로 봐야 할 것임.

○ 충남도가 현재 기계·부품산업 관련 기술력, 수소분야 인프라 등 측면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 수소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화 촉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과감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결론이 내려짐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을 도 행정부·관계기관 등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2인)

① 최건호 (충청남도 에너지과장)

❍ 충남 수소경제 여건 및 현황

- 전국 발전소 가동 용량(127,338MW)의 20%(25,510MW)로 전국 1위의 비율, 전국 신재생 용량 17,861MW의 13%(2,290MW)로 전국 3위의 비율로 국가 에너지 공급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선도 중임.
- 석유화학 및 제철산업 단지의 풍부한 부생수소 생산량과 냉열활용 액화수소 생산에 적합한 LNG 인수기지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자동차 부품업체 611개, IT·철강 등 전후방 산업, 연구기관 등 자동차부품 산업 관련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수소전기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 을 추진 중.
- 2018년 수소에너지 국가혁신클러스터, 2020년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호재를 맞아 수소산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

❍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 및 전략

- “수소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화” 를 목표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코자 함

-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유휴 송변전 인프라를 활용,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 국내 3대 자동차산업 집적지의 이점을 살려 첨단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소차(FCEV)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부품기술 개발·실증·평가 등 수소전기차 부품 실용화
-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으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고도화 및 안정적 수소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완결적 수소생태계 조성
- 수소에너지 생산 거점 확보와 안정적 공급 및 저장,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수소타운 조성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충전 시스템 및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특례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22년까지 연관기업의 매출 1,559억원, 고용 220명 창출이 예상되며, 수소 에너지 전환으로 '30년까지 1.15조원 매출과 6,650명 고용이 기대되는 호재를 맞이하였음.
- 수소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학·연·관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개방형 혁신 연구실(오픈랩)' 을 구축 운영코자 함.

② 장성혁 (수소지식그룹 대표)

❍ 대외환경 분석

-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글로벌적인 에너지 정책 핵심 방향, 산업분야 수소 생산 트렌드를 다각도로 분석해보면,
- 충남의 수소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키워드는「1) 그린수소, 2) 액화수소, 3) 다양한 상용차의 수소에너지 적용」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충남이 선도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음.

❍ 내부환경 분석

- 충남의 일반현황 분석을 통해 충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1) 주력산업 인력양성, 2) 수출증대, 3)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4) 에너지 효율화, 5) 태양광 산업 및 파이프라인 사업」으로 보이며,

- 충남 상위계획 분석을 통해「1) 민간기업과의 협력, 2) 수소차 보급목표 재검토, 3) 행정·지원체계 강화, 4) 시민사회·기업 네트워크 구축」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충남 기 추진사업을 분석하면「1) 수소차(FCEV) 산업 인력양성, 2) 수소차 해외 우수 기술 수입, 3) 클러스터별 경쟁력 강화, 4) 실증사업별 지원책, 5) 차세대자동차부품 우수기술 발굴 및 판로개척」등의 과제기획이 요구됨

- 충남의 수소자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에너지기업·앵커기업, 대학교, 지원기관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경쟁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1) 산·학·연 간 융화, 2)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3) 실무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충남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 충남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축(수소산업 클러스터)', '상생협력 미래견인(R&D 실증 클러스터)', '지역특화 수소신산업 확산(수소신산업 클러스터)', '사업추진 역량 확보(성장 지원 클러스터)' 의 4대 전략목표를 기본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전략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것임.

- 4대 전략목표에 따라 과제별 세부추진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하며 전략과제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선정이 중요하다 하겠음.

- 세부 추진사업별 적합한 단계별 이행시기 로드맵을 촘촘하게 편성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하여 전국 지자체 중 수소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2 지정토론(5인)

① 이택홍 (호서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 충남이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며, 연계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주요사업으로는 충남 항구에 외국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를 저장하는 대형 저장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호주대사관과 관련 산업체의 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틀을 만들고 충남이 이를 이끌어 갈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함.
- 액체유기화합물(LOHC) 대산 석유화학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저장매체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사항, 안전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수소산업 추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임.
- 수소산업의 경제성·환경성 등에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꾸준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② 김영수 (충남테크노파크 미래산업기획연구단 선임연구원)

- 충남은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소경제팀을 발족하고, 수소산업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으나, 울산·창원·강원 등에 차례로 추월당하고, 사업내용에서 특별히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핵심이라 할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수행할 수전해(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기술) 시스템 공급업체가 없으며 2022년까지 시간당 15kg의 수전해기 장치 기술개발을 목표하는 수준임.
- 우리의 수소 운송방식인 튜브트레일러는 40톤의 거대한 쇳덩이로 효율성이 매우 낮음. 이를 개선할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 개발에 지자체가 뛰어들고 있으며, 버스와 트럭과 같은 상용차 부문에 이 기술을 접목할 도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기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사업을 기획 중임. 기계가공 산업에 뛰어난 강점을 수전해기 생산으로 유도하고, 이를 고도화할 기술지원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렇게 국산화한 부품을 실제 서해안에 구축될 풍력·태양광 등의 발전단지와 연계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 정책에 맞추어 수전해 시스템을 충남에서 본격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함.

❍ 현재 충전소, 연료전지 보급 등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충남만의 방식 추진도 더해야 함. 부생수소 공급이 수도권 가까이에서 이뤄지는 이점을 살려 수도권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LOHC, PH2 공급망 등 수소 이송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을 적극 연계 추진해야 함. 또한 수소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상황에 대비한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과 연계한 수소 공급능력 확장사업이나 그린수소 공급망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독일과 같은 P2G(신재생 에너지의 잉여 출력을 통해 기체 연료를 생산하는 것)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③ 윤평호 (대전일보사 기자)

❍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면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 오므로 수소산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임.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뿐 아니라, 각종 홍보매체 활용, 수소산업 홍보시민관 위촉, 충남학 내용에 수소산업 포함, 수소 시민펀드 발행 등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메갈로폴리스(초광역화) 논의와 같이 충남·대전·세종·충북 지자체 간 수소산업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협력의 경험과 기틀을 다져나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긍정적 요인이 될 것임

❍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격차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함.

수소산업이 자동차부품제조, 석유화학철강단지 등 기존 산업인프라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탓에 지역 간 산업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도내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와 충남 수소산업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도 격차 해소의 한 방법이 될 것임.

④ 송형석 (영화테크 주식회사 기술이사)

- ❍ 수전해 기술을 비롯한 수소산업의 핵심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임. 100KW 이상 고전압 측정 설비를 포함 '고전압설비 기반 구축사업'의 추가 확대 지원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 늘어가는 소비자 수요와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다양한 수소차 아이템 개발을 위한 추가 R&D(연구개발) 자금 지원으로 도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촉진 필요
- ❍ 도내 대학들과 연계하녀 고전압 기술과 소재 부품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 추진 필요

⑤ 박기남 (충남에너지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 충남도의 6차 에너지계획은 250%의 전력자립도를 2040년까지 150% 로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40%까지 확대하는 것임
- ❍ 충남도의 부생수소 생산계획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것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므로 탄소배출 영향평가가 필요하며, 그린수소가 가능하기 위한 충남도의 재생에너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는 데도 에너지 손실은 발생하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한 수소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 수소산업 시민펀드 제안을 재생에너지 시민펀드로 확장해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증진해야 함
- ❍ 한국형 뉴딜사업 추진에서는 지역 차별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이 더 요구되는 상황임. 다소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슬기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임.

❍ 중요한 선결과제인 주민수용성과 거버넌스 확대 등은 투명한 계획 공유와 주민 및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3 마무리 말씀

[안장헌 의원]

❍ 충남이 수소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차지할 잠재력과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음.

❍ 한편, 부생수소 생산방식에서도 탄소배출이 일어나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소산업 핵심기술력의 국산화 등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음을 확인하였음.

❍ 강원도가 불과 얼마전까지 기술력, 인프라 등 어느 것 하나 앞서지 않았음에도 수소산업의 선두 지자체로 떠오른 것만 봐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방증이라 하겠음.

❍ 오늘 나온 의견들이 충분히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회 차원의 모든 협력방안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림.

III 도출과제

❍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전세계가 공감하는 에너지 정책 핵심방향이나, 충남도의 수소정책이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그린수소, 친환경 재생에너지 방식이 맞는지 점검 필요

- ❍ 충남도의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4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계획이 실현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추진이 필요
- ❍ 수소산업 관련 국산 기술력 향상을 위한 R&D 지원 확대 필요
- ❍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등 수소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시스템 마련
- ❍ 도민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의 비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거버넌스 확대 및 의견수렴 절차 마련

Ⅳ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 상임위 통과

- “‘반민특위’ 활동과 연계해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해 민족정기 바로 세우겠다.”-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이하 ‘반민특위’)가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은 물론,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반민특위 봉양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3)은 “광복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

써 우리민족 정기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면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등과 맞물려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지적했다.

이어 봉 부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 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활동과 연계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봉 부위원장 "궁극적으로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가 전국 시·도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까지 파급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강제징용 피해자·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로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 10월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본 건은 지난 2020년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이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1078억 원의 대규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난 12월 1일부터 총 10일간,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김우석 의원, 이기형 의원, 박덕동 의원, 김은주 의원, 이애형 의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 를 구성·운영했다.

임채철 소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총 사업비 1078억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도교육청 독단적으로 일괄발주를 추진했다" 며, "전문가들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이 사업 관련 자료들을 집중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사항과 행정처리 부적절 사항들을 발견했다" 고 밝혔다.

이후 조사 소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교육기획위원회는 "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했으며, 오늘(18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 지방계약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적용 부적정 △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부실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사업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김우석 의원은 “신속한 추진, 편리성 도모,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괄발주로 추진한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는 코로나시대 도내 지역·중소업체들의 사업참여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모든 행정처리에서의 기본은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하면 단호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5.]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 관리 업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와 감염병 예방 · 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축 · 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 · 의약외품 · 물품 · 장비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 · 방역 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에서 용어를 정비함(제2조제21호 신설 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제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다.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함(제12조제1항제2호).

라.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사 · 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추가함(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마.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제39조의3제1항 등).

바.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함(제49조의2).

사.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를 마련함(제49조의3 신설).

아.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0조의3제1항).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15호, 2020. 6. 9., 제정]

제정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 · 전시 · 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 · 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장애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질의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국비 또는 광주광역시 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의 계상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 전 또는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의견20-0291, 2020. 12. 2., 광주광역시 서구]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국비 또는 광주광역시 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의 계상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광주광역시장에게 신청하려는 경우와 국가에 대한 특별교부세 또는 광주광역시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 전 또는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재정법」제24조 등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직권에 따라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교부세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또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그 중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각주: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재정법」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위임에 따라 해당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광주광역시의 경우「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청장의 교부신청 또는 광주광역시의 일괄 교부, 광주광역시장의 직권의 방식으로 교부됨)에서는, 자치구에서 질의요지와 같이 보조사업의 예산 계상 신청 및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이하 "보조사업신청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의 구청장과 구의회 사이의 권한관계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를 때 구의회에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신청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광주시서구조례안"이라 함)에서는 구청장이 보조사업신청등을 하려는 경우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신청 전에 구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제7조제1항 본문),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도록(제7조제1항 단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각주: 광주시서구조례안 제7조제1항의 경우 그 세부문언이 질의요지와 다른 면이 있으나

입안 중인 조례안임을 고려하여 질의요지에 따라 내용을 정리함) 위와 같은 보고 의무 외에 보고 후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치구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특별교부세,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부터 교부받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모두 세입으로 자치구의 예산에 편입되는데,(각주:「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3항,「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및 별표 8 참조)「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확정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9조제1항제2호),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40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42조제2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제41조, 제42조) 외에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대하여 감시·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상에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 등에 관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의 집행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보조사업신청등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각 규정은 보조사업신청등의 대상이 그 보조사업신청등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것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보조사업신청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가 교부받은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은 그와 관련한 사업에 같은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지와 무관하게 같은 구의 예산에 편입되고 그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 대상이 되며,「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 역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광주시서구조례안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질의요지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보조사업신청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된다거나 또는 보조사업신청등과 관련된 구청장의 사무집행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20. 7. 14. 의견제시 20-0149, 법제처 2019. 8. 20. 의견제시 19-0266, 법제처 2019. 2. 14. 의견제시 19-0060, 법제처 2016. 12. 2. 의견제시 16-0328, 법제처 2015. 11. 12. 의견제시 15-0294 등 취지 참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지방으로의 사무 재분배와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충남과 대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정돼 그동안 차별이 해소되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무총리가 방송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부 임기 내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도민 허탈감이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360만 충청인은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주저하는 것은 충청인을 다시 한번 차별하는 처사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한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 초집중화는 지방소멸을 비롯해 교육·교통·주택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 12. 18.일 보도자료-

MEMO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20년 12월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연 락 처 : (041) 635-5124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